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930호
2. 발 의 자 : 김 경 의원 외 18인
3. 발의일자 : 2023. 5. 30.
4. 회부일자 : 2023. 6. 5.

II . 제안이유

-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학생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III . 주요내용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을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청소년 보호법」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 타

○ 입법예고(2023. 6. 8. ~ 6. 12.) 결과 : 의견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3년 5월 30일 김 경 의원 등 19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930호로 발의되어 2023년 6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약물 오·남용에 따르는 피해를 줄이고자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마약의 인터넷 유통이 성행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sup>1)</sup>
- 특히 최근 5년간 전국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대 마약 사범은 2022년 4,203명으로 2018년 1,392명의 약 3배에 달하며 10대 마약 사범 또한 2018년 104명에서 2022년 294명으로 약 183% 증가하였습니다.

[표-1] 최근 5년간 전국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경찰청)

(단위: 명)

연도	총 검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2018	8,107	104	1,392	1,804	2,085	1,393	1,196	133
2019	10,411	164	2,422	2,499	2,207	1,572	1,295	252
2020	12,209	241	3,211	2,803	2,346	1,563	1,801	244
2021	10,626	309	3,507	2,437	1,781	1,235	1,229	128
2022	12,387	294	4,203	2,817	1,764	1,352	1,829	128

1) 보도자료: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 아니다... 30% "마약 마음먹으면 쉽게 구할 것"(한국일보, 2023.2.11.)

- 특히 현재 마약 거래가 사회관계망 및 인터넷을 통해 생활공간에서까지 손쉽게 이루어져 학생들이 유해약물에 쉽게 노출되는 상황이 형성되고 있는바,

동 조례안이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를 규정하였고 본칙 규정으로 예방교육계획의 수립(안 제4조), 지원사업(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비밀준수의 의무(안 제7조) 등을 규정하여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2) 조례안 제명, 정의(안 제2조) 및 각 조항의 “마약류” 용어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는 “학생”, “마약류”, “유해약물”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마약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sup>2)</sup>로, “유해약물”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sup>3)</sup>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2조(정의)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제2조(정의)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 이 중 청소년유해약물과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  
 목은 청소년유해약물의 범위에 담배, 환각물질과 더불어 마약류를 포  
 함하고 있는바,

동 조례안 제명 및 정의 규정과 각 조항에 규정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경우 “마약류”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참고로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 중  
 12개 교육청에서 유해약물 예방교육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  
 중 조례 제명에 “마약류”가 포함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타 시도교육청 유해약물 예방교육 관련 조례 현황

연번	조례명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2	경기도교육청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
3	경상남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4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5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6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8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9	전라남도교육청 유해약물 피해 예방 교육 조례
10	전라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흡연음주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12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  
 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다. 교육청 의견에 대한 검토

### 1) 안 제1조(목적)

-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1조 목적 규정에 대해 예방교육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을 “건강 보호·증진”으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8833, 2023. 6. 8.).
- 그러나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효과는 건강 증진에만 국한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보건 향상이나 건강 증진 모두 청소년의 건강권 차원에서 교육청이 동시에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점에서 동 조례안의 목적 조항을 굳이 수정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안 제4조(예방교육계획의 수립)

- 교육청은 예방교육계획의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안 제4조제3호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에서 예방교육 대상을 학생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예방교육”으로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생애주기”는 “일생을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으로 구분한 것<sup>4)</sup>”을 뜻하는바, 최근 젊은층의 마약 사범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은 “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교육”으로 수정하는 것이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대상이 학생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4) 네이버 국어사전

참고로 ‘생애주기’ 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안 제5조 지원사업과 관련된 조항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이유로 ‘생애주기’ 를 ‘학생 발달단계’ 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리고 교육청은 예방교육계획의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하나로 규정된 안 제4조제4호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방안” 과 관련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개인정보 파악 불가로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년 6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는 등<sup>5)</sup>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은 교육청 소관 업무가 아닌바, 안 제4조제4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이준석 2180-8263	입법조사관	김한수 2180-8269
----------	------------------	-------	------------------

5) 보도자료: 마약 오남용 예방, 사회재활 강화...‘마약예방재활팀’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2023.6.1.)